

제277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
제1차 회의 2021. 3. 22.(월)

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자치행정위원회

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

1. 제안경과

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0일 최성임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남양주시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·예술·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, 제2조)

나. 경비 지원 및 지원경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, 제5조)

다.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 ~ 제12조)

라. 우수기관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5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1

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참조)

다. 관련부서 : 문화예술과

라. 입법예고 : 2021. 3. 11. ~ 3. 17.(5일간) / 의견없음.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지역의 문화시설인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하고 육성·발전시킴으로써 문화·예술·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한 안건입니다.

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는 시에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경비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정하였고,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박물관 미술관 진흥위원회 설치, 기능 및 운영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.

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워 경쟁력이 낮아진 박물관 및 미술관에 폭넓고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제4조(경비지원) 및 제16조(유물 및 미술품의 기증 등)에 의한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 필요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2항 제2호에 해당
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관내 박물관·미술관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및 사업 수요 조사 등 산출에 시일이 소요되어 정확한 추계 어려움

4. 작성자

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장 김길원

☑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박물관”이란 문화·예술·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·고고(考古)·인류·민속·예술·동물·식물·광물·과학·기술·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·관리·보존·조사·연구·전시·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.
2. “미술관”이란 문화·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·조각·공예·건축·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·관리·보존·조사·연구·전시·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9조(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)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·공·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,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·육성,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을 설립·운영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소관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